



전 주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21가단19998 건물인도
원 고 주식회사 A
소송대리인 B
피 고 C
변 론 종 결 2022. 3. 25.
판 결 선 고 2022. 5. 6.

주 문

1. 피고는 D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피고는 2019. 1. 26. D으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을 보증금 20,000,000원, 차임 월 500,000원, 기간 2021. 2. 28.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



다(갑 제1호증의 6).

원고는 2019. 3. 22.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,000,000원을 양수하였고, 피고는 2019. 6. 12. D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(갑 제1호증의 2, 4, 5).

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은 2021. 2. 28.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,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, 원고는 위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건물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, 그와 같은 기간 연장의 합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(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8다카4253,4260 판결).

판사 허윤범

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2-06-28

부동산의 표시

1. 건물의 표시

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

[도로명주소]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

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3층 단독주택

1층 155.04㎡

2층 165.58㎡

3층 159.96㎡

중 1층 전체 155.04㎡

- 이 상 -